

CLOSING ACCOUNTS &
TAX ADJUSTMENT OF CORPORATION

2021 법인세 신고대비
개정 및 실무이슈

HIT THE SPOT SERIES 1

2020년 귀속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YOUR BEST HRD PARTNER
씨어프오아카데미
www.cfoi.kr

2020년 귀속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1)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였으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였다. 2020.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를 적용한다.

(2) 접대비 한도(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향(법인법 §25의4, 조특법 §136)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인상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개정하여 내국법인이 2020.1.1.부터 2020.12.31.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그 비율을 상향하여 산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32①).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및 이월방식 조정(법인령 §50의2 ⑦⑩⑬)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필요경비) 산입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를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하도록 개정하였다.

(5) 2020년 사업연도 귀속 기획재정부 개정안(2020.7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안)을 2020.7월에 발표하였으며 부칙에 따라 2021.1.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 24 신설 및 § 5·25·25의4·25의5·25의7 폐지(2020,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 25의5, 조특령 § 22의9)
-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 144①)
- ④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 13·§ 76의13)
- 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 57)
- 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100의32, 조특령 § 100의32)